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연계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안제7조 제4항)

- 1)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수 있도록 함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파기요구의사표시 안내 (안제7조 제5항)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파기요구권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파기요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함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근거 마련(안제7조 제8항)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마련(안 제15조)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당사자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2항, 기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1항, 신설)에 대해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 부과·징수 기준 마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소방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파기요구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파기요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6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법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6조제2항 | 200    | 400   | 800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br>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③<br>(생 략)                         |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br>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br>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br>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br>로 한다.     |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b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br>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br>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br>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br>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br>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br>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br>서를 포함한다.), 전산기록장치,<br>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br>여 제공할 수 있다. |
|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는 전산기<br>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br>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br>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br>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br>제공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5항<br>에 따른 파기요구 권리에 대한<br>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br>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br>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br>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파기요<br>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br>으로 받아야 한다.                      |
| 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 ① <삭 제>                                                                                                                                                                                                                 |

장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  
----- 제6항--  
-----  
-----  
-----.

⑦ -----  
----- 제7항--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3891 |